

제목	국문	의료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의 신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적용한계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Attitude Survey and Application Limits in the Exemption from Criminal Penalty of the Medical Negligence			
저자 및 소속	국문	이인영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영문	Lee, In Young Department of Law, Hallym University			
분야	보건관리 [의료법]	발표자	이인영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2년 12월 1일			

1. 목적

형사처벌특례조항은 1982년에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에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과정에서 이 조항의 신설이 법률적 쟁점사항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료행위의 선의성의 특성과 의료사고를 모두 범죄로 처벌하면 과잉진료, 방어진료, 위험진료회피 등의 진료형태를 조장하게 되므로 의료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을 인정하자는 주장과 다른 산업현장 위험종사자와 비교하여 의료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특례조항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상호 대립되었다. 최근 정부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당해 의료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의 신설과 관련해서 그 적용법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의식조사(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자료로 하여 의료분쟁조정법안상의 형사처벌 특례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방법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은 과실범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와 ''신뢰의 원칙''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처벌특례조항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 1 조) 최근 의료과실범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피해자가 먼저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반면에 실제 기소되는 의료인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공소제기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즉 형사처벌특례규정을 적용하자는 입법논의에 대한 고찰과 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도와 동의여부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가. 형사처벌특례조항의 적용법리와 적용한계에 대한 문헌연구

- 나. 의료과실범의 현황과 양형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법적 고찰
- 다. 의료분쟁조정법안상의 처벌특례조항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과실범에 대한 처벌특례조항에 관한 법의식 조사분석
- 마. 처벌특례조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의 마련

3. 결과

연구중

4. 고찰

연구중